#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0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성일종·서범수·인요한

김소희 • 박덕흠 • 최수진

장동혁 • 이헌승 • 백종헌

서지영 • 고동진 • 유용원

이종욱 의원(13인)

### 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시자격, 군사교육과정, 병적편입 및 제적,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알오티시 선발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알오티시 지원자가 급감하여 군의 초급간부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을 정예화된 군 초급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 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지원 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 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시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시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시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제8조 및 제9조).
- 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 마.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알오티시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 (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 대학교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 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소위로 임용 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 3조).
-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 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알오티시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 자.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 티시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

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5년 이상 복 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 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 카.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 시험에 응시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점수에 만점의 3퍼센트 이내 에서 가점(加點)하도록 함(안 제37조).
- 타.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일부를 취업지원 대상 자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38조).
-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 하.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전역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알오티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제48조 및 제50조).

- 거. 국가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 너. 알오티시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60조 및 제64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등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 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로 함(안 제68조).
- 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78조).
- 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함(안 제83조).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알오티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알오티시 제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능한 국가사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군사교육단"이란 국가가 제1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으로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군사교육기구(이하 "학군단"이라 한다)를 말한다.
- 2. "알오티시(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란 제12 조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장교가 될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 교육생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 3. "알오티시 교육생"이란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으로서 학군단에 입

단하여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문무겸비(文武兼備)"란 대학생활을 통하여 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함과 동시에 알오티시 교육훈련과 군간부 생활을 통하여 군사학 지식, 기술 및 경험을 쌓아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역량을 두루 갖추는 것을 말한다.
- 5. "알오티시 전역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퇴역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의무복무 알오티시전역자: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되어 제23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 또는 퇴역으로 전환된 자
  - 나.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6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 또는 퇴역으로 전환된 자
  - 다. 중·장기복무 알오티시전역자: 직업군인으로서의 생활 영위를 주된 목적으로 6년 이상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또는 퇴역 으로 전환된 자
  - 라.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의무복무 알오티시전역자와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

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7.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 나. 공공기관
  - 다. 사립학교
- 8. "알오티시 인턴사업"이란 알오티시 교육생 또는 일반 알오티시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직장경력을 형성하게 하 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지원사업을 말한다.
- 9. "알오티시 인턴"이란 알오티시 인턴사업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민간기업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 이나 민간기업에서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 10. "알오티시 추모공원시설"이란 화장시설, 안장시설, 장례식장, 기념탑, 조경시설,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알오티시 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11.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이란 알오티시 추모공원시설을 설치 또

는 변경하는 사업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무겸비(文武兼備)의 알오티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사회 발전과 호국안보강화에 기여하고, 이들이 건전한 시민과 훌륭한 국가사회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 오티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정한 처우보장) ①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는 알 오티시 교육훈련 또는 군복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봉사 및 사회경제적 편익 등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취업, 교육 및 주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처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다른 일반대학생에 비하여 알오티시 교육생이 추가적으로 국가사 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과 노력가치

- 2. 사관학교 등 다른 장교양성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알오티시 교육 생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등 혜택의 정도
- 3. 현역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가사회에 기여한 국가안보 편익
- 4.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사회 기여 편익
-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정기적으로 산정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알오티시 교육생 및 일반 알오티시 전역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규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알오티시 정책추진체계

제7조(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알오티시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시전역자 등의 지원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알

- 오티시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알오티시 교육생 모집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 3.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알오티시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5. 문무겸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알오티시의 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알오티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오티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알오티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알오티시 발전위원회) 기본계획,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회장, 그리고 알오티시·국방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되다.
  - ③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알오티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알오티시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학군단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육군 ·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을 연 마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문무겸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 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지정한다.
  - 1.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 정하는 적정한 수의 알오티시 교육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 4. 그 밖에 대학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③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생의 교육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학군단의 폐지)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군단 알오 티시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 가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폐 지할 수 있다.
- 제14조(대학생활과 조화) ①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교육과정이 대학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알오티시 교육생의 언행, 태도, 복장 및 두발 등은 대학문화를 현저하게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절도있게 구분되어야 한다.
- 제15조(알오티시 교육생의 자격요건) 학군단에 입단하여 알오티시 교육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학 재학생일 것
  - 3.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 4.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것
  - 5.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것
- 제16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알오티시 교육생 모집계 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알오티시 교육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대학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모집공고 등에 따라 알오티시 교육생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서를 대학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군 참모총장은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알오티시 교육생을 선발한다.
- 제17조(군사교육의 주관) 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12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알오티시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 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8조(교과과정 등) ① 알오티시 교육과정의 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교내교육은 학교에서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및 자질과 문무겸비의 지도적 역량을 쌓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

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③ 각군 참모총장은 알오티시 교육생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교과과정의 내용·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군복 및 단복착용) ①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알오티시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 시간 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알오티시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 기간 중 교육장소 등 특정장소에서 알오티시 교육생 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 등에 관한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0조(알오티시 교육생의 학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알오티시 교육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1.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 학비(이하 "학비"라 한다)
  - 2. 대학기숙사 입주비
  - 3. 단복 등 피복비
  - 4. 교내교육 및 입영교육 수당

- 5. 품위유지 수당
-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알오티시 교육생의 학비 감면
- 2. 알오티시 교육생의 기숙사 입주비 감면 및 우선 배정
- 3. 알오티시 교육시간과 대학수업 시간의 조화
- 제21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병적편입 및 제적) ① 제16조에 따라 알오티시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 편입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 2.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 ③ 제2항에 따라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교육이수자의 임명) ① 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와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렁으로 정한다.
- 제23조(의무복무 등) ① 제22조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경비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알오티시 교육생 또는 알오티시 의무복무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연장을 하거나 중·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
- 제24조(사상자 보상) 알오티시 교육생이 해당 군사교육(교내 군사교육

을 포함한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 제25조(부상자 치료) ① 알오티시 교육생으로서 해당 군사교육 중(교 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대학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대학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 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제26조(알오티시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① 국가는 알오티시 교육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장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 등 지원정책 제1절 알오티시 인턴사업의 활성화

- 제27조(알오티시 인턴사업추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전역예정자를 포함 한다)가 국가사회에 기여한 헌신과 봉사 등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현 장경험을 통하여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인턴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 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알오티시 인턴사업 안내 및 홍보
  - 2. 알오티시 인턴 희망자의 모집 및 알선 등 신청 접수 및 적격 여 부 확인
  - 3. 알오티시 인턴을 채용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하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알오티시 인 턴사업 참여 수요조사
  - 4. 알오티시 인턴희망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전직무교육 실시
  - 5. 알오티시 인턴과 알오티시 인턴채용자 간 인턴약정서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후 진행 지도관리

- 6. 알오티시 인턴채용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금 지급
- 7. 그 밖에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타시 인턴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전담기관의 알오티시 인턴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28조(알오티시 인턴희망자 등의 모집) ① 전담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알오티시 인턴희망자와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기관의 알오티시 인턴채용 규모를 미리 정할 수 있 다.
  - ③ 알오티시 인턴희망자는 알오티시 인턴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 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알오티시 인턴채용신 청서, 인턴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모절차, 신청서식 등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알오티시 인턴의 추천 및 선발) ① 전담기관은 알오티시 인턴 희망자에 대하여 개인의 적성·전공 및 희망취업직종 등을 파악하

- 여 알오티시 인턴채용자에게 추천한다.
- ②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제1항에 따라 알오티시 인턴희망자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알오티시 인턴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알오티시 인턴의 공모 및 추천, 알오티시 인턴채용자의 알오티시 인턴 선발, 알오티시 인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알오티시 인턴 약정서 등의 체결) ① 알오티시 인턴채용예정자 와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근무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알 오티시 인턴약정서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한다.
  - ② 전담기관과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알오티시 인턴근무 개시일이전까지 알오티시 인턴제도의 취지, 알오티시 인턴채용자의 의무및 책임, 알오티시 인턴약정서 위반시 제재 등이 포함된 알오티시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1조(알오티시 인턴보조금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시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시설·장비 이용,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범위와 수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알오티시 인턴의 관리) ①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국방부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티시 인턴의 인적사항, 채용 및 이력 등을 포함한 알오티시 인턴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알오티시 인턴을 채용한 경우 청사나 사무실 출입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알오티시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알오티시 인턴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알오티시 인턴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 그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3. 인턴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4. 인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5. 사전승인 없이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때. 단, 군복무는 제외한다.
- 6. 알오티시 인턴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
-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⑤ 그 밖에 알오티시 인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알오티시 인턴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

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직무이탈 금지 및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 중인 일반 알오티시 전역예정 자가 알오티시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에 또는 기간을 나누어서 알오티시 인턴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알오티시 인턴이 해당 인턴근무 기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는 「군형법」을 적용한다.

### 제2절 공공부문 채용촉진

- 제34조(취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 시전역자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 다.
  - ②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일반 알오티시전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5조(5급 공무원 특별채용)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이하 이조 및 제36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규모,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특별채용 시험시기 및 시험과목, 응시절차, 합격자 선발 등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7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점수에 만점의 3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일부를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 ③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 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공공기관 및 제3항의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로 하여금 필요한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경력기간의 합산)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는 우선 고용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여야 한다.

### 제3절 민간기업 채용촉진

제40조(채용협약 체결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 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금융·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1조(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 오티시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채용협 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고용 우수기 업의 인증(이하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에 국가보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 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오티

- 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알오티시 고용우수 기업 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경력기간의 합산권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들에게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군복무 경력을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 간에 합산(合算)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절 그 밖의 지원

- 제43조(취업활동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게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취업알선 등을 지원 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련 분야 구인 · 구직 정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근 무경험 프로그램
- 3.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채용촉진 홍보활동
- 4.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 5. 그 밖에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를 제48 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창업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 4. 창업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5. 창업 관련 제품의 성분분석 · 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 6. 창업 관련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 7. 그 밖에 창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
- 제45조(대학원 교육지원) 국가는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로서 「고등 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46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토 구입 대부
  -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 3. 사업 대부
  - 4. 생활안정 대부
  - 5. 학자금 대부
  -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주택의 우선 공급)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 는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에게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 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 터 제1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제5장 알오티시 단체 설립 제1절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 제48조(법인격) ① 알오티시 전역자는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중앙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7. 자산 · 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사업)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중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 2. 알오티시 교육생 및 회원의 협력 및 지원 등 알오티시 발전을 위한 사업
- 3. 알오티시의 명예선양, 추모공원사업, 기념사업 등 문무겸비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 5.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 6. 알오티시 교육생 및 회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사업
- 7.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제51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알오티시 전역자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알오티시 현역장교 및 중앙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티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 제52조(조직 등)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지구 및 지회를 둔다.
- ② 중앙회, 지구 및 지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 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4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 제5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지회장 및 분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5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7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8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 제5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절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

- 제60조(설립 등) ① 알오티시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대한민 국 알오티시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2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오티시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알오티시 전역자
  - 2. 알오티시 현역복무자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제63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 4. 회원을 위한 복지 · 후생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5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회원의 부담금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제66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 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행정조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 제68조(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 시행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호국안보 등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및 봉사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시 추모 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추모공원 안장대상자는 알오티시 전역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알오티시 전역자가 추모공원 사업시행자와 미리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유족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추모공원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중앙회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본방안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추모공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 제69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모공원 사업계획(이하 "추모 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추모공원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추모공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 3. 사업시행기간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5. 관리운영계획
- 6. 그 밖에 추모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 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모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모공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추모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추모공원 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추모공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승인된 추모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추모공원사업 승인절차, 추모공원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70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 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 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 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7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추모공원 승인권자가 제6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0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

- 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 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
-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모공원사업계획과 함께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 제7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70조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의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4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7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추모공원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추모공원 승인권자가 미

-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 제76조(추모공원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한다.
  - ③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추모공원사업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모공원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추모공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 승인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7조(추모공원조성의 특례) ① 중앙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9조(알오티시 기념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에 알오티시와 관련한 시설물이나 기념관·박 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 ② 알오티시와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알오티시 문화의 창달 등) ① 국가는 알오티시에 관한 진취적 인 사상을 높이고 알오티시의 문무겸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알오티시의 활동과 기여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1조(국제협력 촉진) ① 국가는 알오티시 제도와 교육훈련, 알오티시 전역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알오티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시와 관련된 제도와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 세미나 등의 사업을 할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관계 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 제8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다.
-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6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 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단법인 알오티시 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알오티시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60조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60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60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60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의 명의로 한다.
- 제3조(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은 제69조에 따른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일반 알오티시전역자로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인정한 사람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7조제2항 중 "학생 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각각 "학생군사교육단 알오티시 교육생" 으로 한다.

③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3호,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생군사교육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단 알오티시 교육생"으로 한다.

④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사관후보생"을 "학군알오티시 교육생"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단 알오티시 교육생"으로한다.

제20조제1항 중 "학군사관후보생"을 "학군알오티시 교육생"으로 한다.